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89 발의연월일: 2020. 9. 24.

발 의 자 : 안호영 · 윤미향 · 윤준병

송옥주 · 임종성 · 양이원영

아수진비 · 진성준 · 이소영

김수흥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-환경계획 간 정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국가와 지방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 및 국토-환경계획간 정합성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, 앞으로는 시·도의 환경계획은 환경부장관이, 시·군·구의 환경계획은 시·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가와 광역-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토 -환경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, 그간 없었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지자체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(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).
- 나.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승인 절차 마련(안 제18조제2항,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삭제,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).
- 다. 시·군·구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(안 제19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'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'를 '수렴하여야 한다'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,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시·도 환경계획의 승인) ① 시·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·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·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시・군・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

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2(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승인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 ·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·도 및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·도 환경계획 및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립·변경하

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시・도의 환경보전계획의	제18조(시・도의 환경보전계획의
수립 등) ① (생 략)	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・도지사는 시・도 환경계	②
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	
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	
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	
견을 <u>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</u>	<u>수렴하여야 한다</u>
<u>한다</u> 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③ 시・도지사는 시・도 환경계	<u><삭 제></u>
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	
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	
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시・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
	준,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
	요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
	<u>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18조의2(시・도 환경계획의 승
	인) ① 시·도지사는 제18조에
	따라 시·도 환경계획을 수립
	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

제19조(시・군・구의 환경보전계 제19조(시・군・구의 환경보전계 획의 수립 등) ① (생 략)

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시・군・구 환경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 ·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 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 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 다.

③ (생략)

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 · 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시・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 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・군 수 ·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.

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 음)

<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 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 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 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 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- ⑤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 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.
- 제19조의2(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승인) ①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승인하 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 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 서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

<u>다.</u>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야 한다.